

#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청 책임 및 처벌 강화!

2018년 12월 24(월) | www.nodong.org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 02-2670-9136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태안화력발전 24살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



<태안화력 김용균 유품>

지난 12월 11일,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홀로 4km에 이르는 석탄운송설비를 걸어서 야간 점검하던 하청 계약직 노동자 김용균님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가 일한 곳은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이지만 소속된 업체는 한국발전기술(주)이라는 외주하청업체 입니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컨베이어벨트 아래 떨어진 석탄을 빼내는 작업은 위험한 업무입니다. 원래 정규직이 하던 2인 1조 업무지만, 발전소의 외주화 구조조정으로 외주하청업체로 떠넘겨 지면서 1인근무로 되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누군가 기계를 멈추고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하지만, 외주업체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이윤을 위해 위험한 업무를 마음대로 외주화할 수 있고, 하청에서 사고가 나도 원청이 책임지지 않은 사회구조가 그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구의역 김군 유품>

2년 전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중 전동차에 치어 숨진 김군의 죽음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도 되풀이 된 것입니다. 2인 1조 원칙을 지킬 수 없었고, 아홉 단계를 거쳐야만 열차를 멈추고 수리할 수 있는 상황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김군의 사망사고 이후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여러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2년 7개월 동안 방치되었습니다. 그 사이 구의역 김군의 죽음이 태안화력발전소 등 여러 비정규직 현장에서는 끊임없이 반복 되었습니다.

### 서부발전 포함 발전사 5개 공기업, 산재사고 97%, 사망 92%가 하청에서 발생

한국남동·서부·중부·남부·동서발전 등 5개 발전사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발생한 사고 346건 가운데 337건(97%)이 하청 업무에서 발생했습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년 동안 이곳에서 산재로 사망한 40명 가운데 하청 노동자는 37명(92%)이었습니다.

# 위험의 외주화 비정규·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는 중대재해

**95%**  
하청노동자  
2015년 주요 30개 기업  
중대재해 사망자 95%가 하청노동자  
2016 국정감사

연도	사망자(명)		
	계	원청	하청(비율)
2011	52	6	46 (88.4%)
2012	53	14	39 (73.5%)
2013	57	7	50 (87.7%)
2014	45	4	41 (91.0%)
2015	38	2	36 (95.0%)
계	245	33	212 (86.5%)

주요 업종별 30개 기업에서 발생한 산재사망 노동자의 95%가 하청노동자이고 원청 사망자(2명)의 18배 달합니다. 반면 원청 책임자가 구속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합니다. 30개 기업에는 대우건설·현대중공업·현대제철·한화케미칼 등 산재다발 업종에 해당하는 주요 대기업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하청노동자 사망 비율은 증가해 죽음의 외주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 2014년 8명 사망 현대중공업, 2016년 13명 사망 중 10명이 하청업체 노동자

2014년 8명의 하청노동자 사망이 이어졌던 현대중공업에서, 2016년에는 1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이중 10명이 하청 노동자입니다. 지난 5년간 현대중공업의 산재사망 중 74%가 하청 노동자입니다. 현대중공업뿐만이 아닙니다. 조선사들은 고용인원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인력의 상당 부분을 협력업체로 채웁니다. 하청에게는 직영의 60% 수준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재벌 대기업이 위험의 외주화를 가속화 하고, 각종 안전관련 규제가 완화하면서 하청 산재사망은 더 심해졌습

니다. 조선업뿐만 아니라 산업현장 거의 모든 분야에서 비정규 노동자들을 위험과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83%**  
하청노동자  
최근 5년간 조선업 사업장 산재사망 112명 중 93명(83%)이 하청노동자  
고용노동부

### 최근 3년간 조선 산업 중대재해 현황 (단위:명)

	조선소 사망총계	원청 사망자수	하청 사망자수	
2012년	27	6	21	78%
2013년	24	4	20	83%
2014년	18	2	16	89%
계	69	12	53	83%

## 한국전력 하청노동자 산재, 원청의 39배 안전장구 원청 73만원/년, 하청 1만7천원/공사당

2016년 영업이익이 14조 3천억에 이르는 한국전력에서 위험한 업무는 하청 노동자의 몫입니다. 한전의 하청노동자 산재발생은 원청 정규직의 39배로, 지난 5년간 총 710명이 한전 협력사에서 일하다 사망했습니다.

22,900V 전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활선공법을 비롯해서 전기원 노동자의 추락, 감전, 각종 직업성 암이 심각합니다. 동일한 작업을 하는 원청 정규직은 1인당 연간 73만원 상당의 안전장구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하청 노동자 평균 3~4명이 팀 작업을 하는 1건 공사당 306만원의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책정된 안전관리비는 1만7천여원입니다.

### 하청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 사례

<자료:민주노총>

사고 사례	사망자수	사고 원인
삼성중공업	6명	2017년 5월 크레인 충돌사고로 임시출연실에 있던 하청 6명 사망
구의역	1명	2016년 5월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 중 열차에 끼여 사망
남양주 지하철	4명	2016년 6월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
한화케미칼	6명	2015년 7월 울산2공장 폐수처리장 증설공사 중 폭발 사고
대림산업	6명	2013년 여수산단 대림산업 공장에서 폭발사고
대우건설	8명	2016년 건설현장에서 추락·협착·질식 등으로 총 8명이 사망
현대중공업	7명	2016년 조선소 등 사업장에서 추락·전도 등으로 7명 사망

# 위험의 외주화로 예방책임도, 사고 처벌도 빠져나가고 대기업 산재보험료 할인이 최근 3년간 1조 3,796억



## 하도급을 주는 이유,

안전공단 2007 연구보고서

하청의 임금 수준이 낮기도 하지만, 하도급을 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유해위험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유해위험한 작업을 하청주면서, 그에 수반되는 안전의무도 외주화하는 것입니다. 현행 산안법의 원청 책임은 사업주 간 협의체, 합동점검, 안전교육 지원 등 제한적인 책임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청이 안전조치를 직접 취해야 하는 원·하청 공동의무는 동일 사업장, 도급계약, 22개 위험장소로 한정되어 있어, 구의역참사도, 태안화력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외주화로 원청이 만들어낸 위험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사고가 나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행 산안법은 법 위반 시 원청이 하청보다 처벌이 낮고, 산재사망에 대한 처벌에서 원청의 법 위반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구의역 사고에 대해서 서울 메트로 대표이사는 산안법 적용 없

이 1,000만원 벌금, 태안화력의 10년간 12명 사망사고도 원청은 처벌 없이 무재해 사업장인증을 받게 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의 솜방망이 처벌

산재사망 벌금이 노동자 1인 당 평균 500만원 내외로 외국 대비 지나치게 낮고, 하청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산재예방은 안전관리 시스템의 문제이나, 하급담당자만 처벌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산재예방은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이 안전투자를 확대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대재해 발생 이후에도 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사업장의 재발방지 대책은 사라지고, 사고가 반복됩니다.

## 30대 기업 산재보험 할인 4,981억

### 삼성전자 1,009억, 현대중공업 228억 감면

위험의 외주화를 선도하는 재벌 대기업. 중대재해 사망자중 하청 노동자 비율이 40%로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업무 외주화로 대기업이 받는 산재보험료 할인은 2015년에만 4,981억입니다. 0.7%에 불과한 대기업이 전체 산재보험료 할인액의 34%를 감면 받았습니

[주요 기업 최근 3년 산재보험 감면액 /단위 : 억원 2016 국정감사 강병원의원실]

기업	삼성	현대 자동차	SK	LG	롯데	포스코	GS	한화	현대 중공업
2015	1,009	785	379	379	265	262	201	169	228
2014	792	749	328	327	273	234	162	166	224
2013	793	609	263	338	234	257	167	176	251

# 영국, 호주, 캐나다에서는 <기업 살인법> 제정 미국은 현대차 하청노동자 1명 사망에 30억 벌금 부과

조선업, 건설업, 철도 부문 등은 매년 고질적으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지만 원청이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기업 법인 뿐 아니라 최고 경영자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현장의 산업재해와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 2016년 산재 사망사고, 평균 벌금액 432만 원

2017년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지난 10년간 3만3648건이 기소되었지만, 95.4%는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기소에 불과합니다. 관련자 구속은 단 9건입니다. 2016년 중대재해 사망사고 사건은 904건으로 1777명을 조사했으나 구속기소는 단 1건이며, 벌금은 평균 432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런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로는 산재를 막을 수도 없고, 매년 2,400명이 산재로 사망하는 OECD 1위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 미국 산업안전보건청 부과벌금 1위 기업 226억

미국에서는 현대기아차 협력업체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원청인 현대 자동차 30억 벌금 부과했습니다. 또한 2008년 안전보건 감독 실시 사업장 121개에 각 1억1천백만원의 벌금을 물기도 했고,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에서 부과한 벌금 순위는 1위 업체가 약 226억원, 2위는 약 124억, 3위는 약 94억에 달합니다.

영국은 2007년 기업

살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산재사망, 재난사고를 포괄하고, 사망사고 유발 기업 매출액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합니다. 벌금의 상한선 없고, 기업의 연매출액의 5~10%, 악의적인 경우는 10%이상까지 벌금을 부과합니다. 기업 살인법 적용으로 1명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6억 9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2008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1,028건 기소하여 80%이상이 유죄판결을 받았고, 평균 벌금이 2,400만원에 달합니다.

최근에는 대형 슈퍼마켓인 ‘아이슬란드’의 에어컨 공기정화시설관리 하청 노동자가 3미터 작업대에서 추락해 사망하자, 원청에게 37억 5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영국은 2007년 기업살인법 제정 전인 2005년 1만명당 사망 노동자 비율이 0.08명이었습니다. 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2014년에는 0.04명까지 산재사망이 줄었습니다. 2014년 한국 산재사망 만인율 1.08로, 영국의 27배에 달합니다.

캐나다와 호주도 기업살인법을 제정해 산재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2003년 호주와 캐나다 제정, 2007년 영국 제정  
미국 오바마 대통령 반복적 산재사망 20년형 법안 의회**

#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으로 위험의 외주화 막고, 원청 책임 및 처벌강화 해야

최근 5년간 사고성 산재로 사망한 하청 노동자만 1,426명에 달합니다. 태안화력의 지속적 하청 산재 사망은 도급의 정의도 범위도, 처벌도 제한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제입니다. 재벌 대기업, 공기업의 하청 산재사망이 지속되는 것은 무수한 안전관리 매뉴얼도 근본적 고용구조 개선 없이는 휴지조각이라는 반증입니다. 유해위험 업무의 도급을 금지하고, 산안법 위반으로 인한 산재사망에 형사 처벌 하한형 도입 없이는 기업의 법 준수 및 예방을 위한 투자, 구조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 28년만의 정부 산안법 전부개정안 민주노총이 제기한 기간의 제도개선 과제 반영

정부가 발표한 28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은 화학물질 독성정보 관리, 건설업 발주처 책임강화, 특수고용, 배달 노동자등 보호범위 확대, 작업중지 강화 등 기간의 제도개선 과제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MSDS 노동부 보고와 영업비밀 사전심사승인 제도가 없이는 삼성반도체 직업병, 7명의 청년이 실명한 메탄올 중독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 발주처 책임강화, 건설기계 원청 책임강화가 없이는 매년 600명이 목숨을 잃는 건설노동자의 현실이 반복될 뿐입니다.

일하는 사람으로 보호대상이 확대되지 않으면 배달앱을 이용한 30분 배달제로 인한 청소년 노동자의 사망, 골프장 경기보조원등 특수

## [민주노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요구안]

### ○ 위험의 외주화금지 범위 확대

- 태안화력, 구의역 등 반복적 하청 산재사망 업종의 도급금지
- 발전사업 정비보수, 궤도수리 보수 업무의 도급금지 법안 명시
- 도급금지 범위 정기적 추가확대 법제화

### ○ 하한형 형사처벌 도입

- 입법예고 당시에 있었으나 국무회의에서 누락된 조항 복원
- 중대재해와 건설 불법 하도급에 의한 산재사망 시 하한형 처벌 도입

### ○ 화학물질, 건설업 재해, 보호범위 확대를 비롯한 전면 개정

- 현행법 일부내용 수정하는 땀질식개정은 근본적 해결 불가

###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연내 국회 통과

- 산재사망 형사처벌 하한형 도입을 포함
- 28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즉각적인 국회통과가 필요

고용노동자의 산재는 멈출 수 없습니다.

## 일부 보완하여 반드시 연내 국회 통과해야

위험의 외주화 금지 입법은 외국은 물론 국내 입법례도 다수 존재 합니다. 유해위험 업무 도급금지 범위는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태안화력 김용균님 업무에 대한 도급금지 조문인 ‘전기사업의 발전설비의 운전, 점검 및 정비 업무와 안전관리 업무’, 구의역 김군 업무에 해당하는 ‘철도, 도시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등 여객운송사업의 운전, 관제, 탑승, 승무, 역무, 보안검색, 소방 활동 업무, 차량, 선박,



항공기 및 안전운행시설의 점검 및 설비 보수 업무’, 방사선 취급 업무 관련 ‘원자력 안전법 제2조의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업무, 방사선 투과 검사 업무’, 마지막으로 반도체 전자, 화학산단등 수리 정비 업무 도급금지 조문으로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또는 독성 등의 유해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 보수, 철거 해체하거나 설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등이 보완되어 통과되어야 합니다.

산재사망 기업 처벌 강화 관련 개정안은 산업법 원청 책임 위반시 하청과 동일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산재사망 법인에게 벌금 10억 이하 벌금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중대재해 발생시 1년 이상의 하한형 처벌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시민·노동자 재해,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습니다!

산재사망과 시민재해에 대한 기업과 공무원의 최고책임자에 대한 숨방망이 처벌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로 공사사장과 기업은 무죄, 기관사는 금고 4년에 처했습니다. 메르스 확산 주범 삼성병원은 벌금 800만원이 전부이고, 가슴기살균제 참사 존리전 옥시대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거제 삼성중공업 타워크레인 사고로 6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사장은 입건도 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故 노회찬의원이 2017년 4월 발의한 법안입니다. 산업재해 및 일반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공중재해에 대하여 사업주(경영책임자)와 기업 자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으로 사업장은 물론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항 이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는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화학물질 독성 정보 정부 보고, 영업비밀 사전 심사, 건설 산재 사망 발주처 책임강화 및 건설기계 원청 책임 강화, 특수고용, 배달 노동 등 보호확대, 작업 중지 불이익 처우 금지 및 노동부 작업중지 명령 법제화 등이 그것입니다.

도급금지와 원청 책임 및 기업처벌 강화 반대는 OECD 산재사망 1위를 계속 방치하겠다는 것입니다. MSDS 보고와 영업비밀 사전심사 반대는 화학물질 누출, 폭발, 직업병의 반복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확대하고, 범위반 산재사망 처벌 하한형 도입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제대로 논의하여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및 하청 노동자도 포함한 노동자와 일반시민 모두가 적용대상자고,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기업 경영책임자가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벌합니다.

경영책임자와 기업법인은 물론 관련 공무원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고, 사망인 경우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억 이하의 벌금을 물어 강력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